##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50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 제 호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② (생 략)	제22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u>&lt;</u> 삭 제>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u>&lt;신 설&gt;</u>	제23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
	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
	해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①</u> ·② (생 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	<u> 정</u>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3	안 제22조 제3항 (벌칙)	법무부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대한 검사 등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형벌 폐지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1	안 제22조 제3항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벌칙)	*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근 5년간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2. 상세 사유

○ 제22조 제3항(벌칙)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을 위해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서류 등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개정 전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된 부분 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을 것이며, 현행법에 따라 최근 5년간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없으며, 조사의 목적이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법무관	검사	과장	실장•국장
김영근	박광호	김봉진	구상엽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광호	02-2110-4458	khpark0925@korea.kr